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73호 2025. 12. 15.(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예천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716호)
-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717호)
- 예천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718호)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719호)
-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720호)
- 예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721호)
- 예천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예천군 조례 제2722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예천군의회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예천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1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16호

예천군 예천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지역대학 대학생들에게 학업장려금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인재 육성과 인구 유입 도모를 위한 예천지역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및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을 말한다.
2. “예천지역대학 대학생”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학업장려금”이란 대학생이 등록금을 제외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업장려

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예천군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

3. 군수가 정하는 학점과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②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시·군·구로 전출 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당해 학년에서 지원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 신청) ① 학업장려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재학 중인 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신청 접수 후 지원 대상자의 재학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학업장려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예천지역대학 대학생이 대학에 재학기간 동안 학년당 1회에 한정하여 최대 120만 원 이내의 학업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천지역대학 대학생이 희망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학업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하여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예천군민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학업장려금을 지원받은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중복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학업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대상 학생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 절차 및 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학업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천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신청서					
☐ 학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학교명	대학(교)		학과	학년	연락처
주소					
기타	해당란에 표시 (※증빙서류 첨부)		☐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교 (기재)	직전학기 평균 성적	점(☐ 70점 미만 ☐ 70점 이상)		재학	☐ 여 ☐ 부
	확인 사항				
☐ 신입생 ☐ 복학생					
학업장려금 지급(택1) ☐ 현금100만원 ☐ 모바일 지역상품권 120만원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학업장려금 지원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예천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제출서류에 대하여 거짓이 있을 경우 학업장려금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본인), 장애인 및 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학업장려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고등교육기관의 재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연락처, 학교성적 등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학업장려금 지원 기간(학교 재학 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예천군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학업장려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 아니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학업장려금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예천군청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초본, 장애인 및 수급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 아니오)				

◇제정이유

- 예천지역대학 대학생들에게 학업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인재 육성과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 제2조)

- 학업장려금 : 등록금을 제외하고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나. 지원대상 및 기준,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제3조 ~ 제4조)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대학 재학생으로 C-학점 이상이면서 예천군에 주소지를 둔 자

다.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제5조)

- 학년당 1회에 한정하여 최대 120만 원 이내의 학업 장려금을 지급

라.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제6조)

마.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제7조)

바. 예산확보 의무 규정(제8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1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17호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 홍보를 위한 물품 구입 및 배부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사업
3.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개인정보 보호 활동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제16조)
 - 개인정보 보호 홍보를 위한 물품 구입 및 배부, 컨설팅 등 지원사업 근거 규정 마련

예천군의회의에서 의결된 예천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1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18호

예천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홍보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 참여 촉진과 열린 군정 구현을 위한 군정 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예천군 군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제호는 “예천별별소식”으로 한다.

제3조(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집호 및 호외 등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군 홈페이지,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소식지는 신문형 또는 책자형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신문형의 규격은 전지 8절로 하고 책자형의 규격은 국배판으로 한다. 다만, 실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편집) ① 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편집인을 두고, 편집인은 홍보소통과장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소식지의 편집과 제작, 전문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편집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외부 기관에 편집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집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게재사항) ①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 도정, 군정 및 지방 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 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예천의 역사, 인물, 관광 등에 관한 사항
4.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 투고(시, 수필, 칼럼, 문예작품, 퀴즈 등) 및 미답 사례
5. 그 밖에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배부 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군민, 기관 및 단체, 출향인 등 그 밖의 관련인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게시대 : 직접 배부 또는 전문배달업체 위탁
2. 군민, 각급 기관·단체, 출향인 및 그 밖의 관련인 등 : 우편발송

제7조(명예 기자) ① 군수는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 기사를 둘 수 있다.

② 명예 기자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소년에게 자기 계발 및 참여 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관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 명예 기사를 선발·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명예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
3. 기타 사유로 명예 기사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명예 기사 회의 및 주요 활동) ① 홍보소통과장은 명예 기사 회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명예 기자의 일반소양과 기사 작성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명예 기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다.

1. 정례회의 및 교육 참석
2. 분기별 1건 이상의 기사 제출
3. 미담 사례 발굴 및 취재
4. 매월 소식지 모니터링 수행

제9조(주민 참여 등) ① 모든 군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편집인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칼럼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원고료 등) ① 명예 기자 회의 참석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 기자, 군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기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일정액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 기자의 현장 학습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외부 전문가에게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행사의 시행 및 보상) ① 군수는 군민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및 군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계획, 정책 및 브랜드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등을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군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설문, 만족도 조사, 퀴즈 및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소식지 발행, 명예 기자 활동, 브랜드 마케팅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 추첨, 선착순, 선발 등의 방법으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참여자에게 현금, 상품권(모바일 기프티콘 포함),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군수는 소식지를 통해 군정 홍보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게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상 세부기준 (제10조, 제11조)

구 분	제공 대상자 및 결정 방식	1인/1건당 제공 금액 한도	1회 운영당 제공 금액 한도	연간 운영 횟수	비고
설문, 의견 개진, 만족도 조사, 투표	응답자 추천	1만원 이하	30만원 이내	12회 이내	
인터뷰 응답, 퀴즈 또는 게임	응답자 추천	1만원 이하	30만원 이내	12회 이내	
참여 활성화 등 기타 행사 참여	심사 또는 추천	5만원 이하	30만원 이내	12회 이내	
구독자 모집 행사 기념품 제공	응모자 전원 또는 추천	5천원 이하	-	50회 이내	
명예 기자 취재 기사	분기 1건 이상 기사 작성 시	5만원 이하	30만원 이내	12회 이내	
독자 투고 (글, 사진 등)	군민의 원고 등 채택 시	3만원 이하	30만원 이내	12회 이내	

◇제정이유

- 군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홍보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 참여 촉진과 열린 군정 구현을 위하여 군정 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적극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명칭, 발행인 및 편집인 지정(제1조 ~ 제4조)

- 군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여 적극 행정 도모
- 발행인(예천군수) 및 편집인(홍보소통과장) 지정

나. 소식지 게재 사항 규정(제5조)

- 국·도·군정 및 지방 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 문화, 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 예천의 역사, 인물, 관광 등에 관한 사항
-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 투고(시, 수필, 칼럼 등) 및 미담 사례, 그 밖에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배부 대상 및 배부 방법 규정(제6조)

- 배부 대상 : 군민, 기관 및 단체, 출향인 등 그 밖의 관련인 등
- 배부 방법 : 우편 발송, 업체 위탁·직접 배송

라. 명예 기자 위촉 및 운영(제7조 ~ 제8조)

- 위촉 방법, 임기, 역할, 해촉 사유 등 주요 활동에 관한 사항

마. 기고, 칼럼 게재 등 주민 참여 및 보상(제9조 ~ 제10조)

- 주민 참여 근거 마련 및 명예 기자 회의 참석 수당, 원고료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바. 정책 홍보, 설문, 만족도 조사, 퀴즈, 아이디어 공모, 소식지 활성화 등 행사 근거 마련(제11조)

사. 포상 및 개인정보 보호 근거 마련(안 제12조 ~ 제13조)

예천군의회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1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19호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10만원”을 “15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5만원”을
“7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참전명예수당 증액(제4조제1호)
 - 월 10만원 → 월 15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증액(제4조제2호)
 - 월 5만원 → 월 7만원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1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20호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2.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군수는 법 제25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물의 관리) 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일괄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

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점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자가 점용허가 후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금액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한다.

제7조(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공원 등의 사용)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도시공원시설 사용신청서 및 제2호, 제3호서식에 따른 행사계획서, 안전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의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5. 12. 15.>

점 용 료

점 용 대 상	점 용 료
1. 도로, 교량, 철도, 궤도 등	재산가액의 5/100 이상
2.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등	재산가액의 5/100 이상
3. 가설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재산가액의 5/100 이상
4. 기존 시설물	재산가액의 5/100 이상
5. 형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	산지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5/100 이상
6. 위 시설 이외의 시설물	재산가액의 5/100 이상

※ 비 고

재산가액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하며,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연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도시공원 시설 사용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원의 종류 및 명칭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시설의 종류				
사용방법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행사계획서

- 목적:
- 일시: 년 월 일
- 이용시간:
- 장소:
- 참여인원: 명
- 신청자 인적사항
 - 성명:
 - 주소:
 -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팩스번호
- 동원장비

위와 같이 행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도장)

안전계획서

○ 행사 전

- 전기 배전반 수시안전점검
- 무대 주변의 안전 여부 점검
- 관람석 주변의 안전 여부 점검
- 앰프, 스피커 등 전기장비의 안전 점검 및 관리

○ 행사 중

- 사회자가 관람객 관람 질서 및 시설물 안전에 대한 주의 방송 실시
- 음주, 흡연 금지 안내방송
- 특히 노인, 어린이, 유아들에 대한 안전에 유의
- 소음 민원이 제기 되지 않도록 각별히 음향기기 소리크기에 주의
- 공연시간을 엄수하고, 건전한 공연 질서를 유지하며 특히 관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함.

○ 행사 후

- 무대 시설 및 주변 정리 정돈 확인
- 전기 배전반 잠금 여부 확인
- 대기실 등의 잠금 여부 확인
- 발생된 쓰레기는 되가져 갈 것

위와 같이 안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도장)

◇개정이유

-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 및 관내 도시공원 증대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분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 개정 :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조례

나. 조례 목적 변경 및 용어 정의 신설(제1조 ~ 제2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위임 사항 전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다. 점용료 납부 단위 세분화 및 면제 규정 신설(제6조 ~ 제7조)

- 점용료 납부 단위를 일 단위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
- 국가, 군에서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점용료 면제 대상 근거 마련

라. 도시공원 시설의 사용 신청 및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규정 신설(제8조 ~ 제9조)

- 도시공원 사용 신청서 양식 추가(별지 제1호~제3호서식)
-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규정 및 금지 예외 사항 규정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1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21호

예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후단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업무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10조의 제1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고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⑧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행위자에게 원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원인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직접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⑨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⑩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고, 부담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5. 12. 15.>

도로별 가로수관리청 구분(제5조 관련)

도로의 종류	가로수 관리청	비 고
일 반 국 도	예 천 군 수	
지 방 도	예 천 군 수	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군도 등 기타도로	예 천 군 수	

부담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9항관련)

부 과 기 준	1. 가로수 등을 옮겨심기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하는 경우 : 도급공사비를 하자담보금으로 예치 나. 관리청이 하는 경우 : 도급공사비 납부 2. 가로수 등을 제거 또는 가지치기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하는 경우 : 제거하는 경우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납부 나. 관리청이 하는 경우 : 제거하는 경우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납부 ※ 제거 및 가지치기 소요 비용 추가 부과 가능 3. 수목 피해의 경우 가. 벌목,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적인 가치가 없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비 납부 나.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가지정리 및 보호시설 작업비 납부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다.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10% + 가지정리 및 보호시설 작업비 납부
비 고	○ 도급공사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재료비+ 노무비+ 제경비) 적용하여 산정 ○ 하자담보금 : 하자담보 기간 동안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 ○ 하자담보금 환불 : 하자담보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담보금을 환불 ○ 납부된 부담금은 세외수입으로 조치하여 복구관리비로 사용

◇개정이유

- 도시숲 및 가로수 등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추가(제4조)

-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1명만 포함할 것

나. 가로수 조성·관리 행위자의 비용 미납 시 징수 근거 마련(제10조)

- 30일 기간 내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다.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 변경(별표2)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1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22호

예천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천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국

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신부, 성인,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보충식품 등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4.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군민의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참여자 지원 등) 군수는 영양·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사업 추진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용품
2. 영양·식생활 인식 개선 등 동기부여를 위한 홍보 물품
3.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포상(지역화폐, 물품 등)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6조의 영양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또는 위탁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예천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제3조)
- 나.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4조)
- 다. 영양관리사업 및 참여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제5조~제6조)
- 라.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및 관련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제8조)